[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공고] : 제 2026-023호

2026년 통합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 입찰 재공고

"COMPA의 통합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사용자 중심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찰 재공고합니다.

2026년 6월 8일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1. 입찰개요

○ 입찰명 : COMPA 통합업무관리시스템(MIS) 고도화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2026년 12월

○ 사업예산 : 89,500,000원 이내(VAT 포함)

○ 제안서 재공고 및 접수마감

- 재공고 기간 : 2026. 6. 8.(월) ~ 6. 15.(월)
- 접수마감 : 2026. 6. 15.(월) 16시까지

○ 제안서 제출 방법 : 제출서류 전자(이메일) 접수

○ 접수처 : 경영혁신팀 정재훈 선임행정원(jhjung@compa.re.kr)

○ 문의처

- 사업관련 : 경영혁신팀 임경수 행정원 (02-6347-5416)
- 접수관련 : 경영혁신팀 정재훈 선임행정원 (02-6347-5414)

○ 기타사항 : 상기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참가 신청서류

○ 서류별 제출방법 및 기한은 제안요청서(RFP) 참조

3. 사업자 선정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업체

※ 제안 업체는「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함.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증을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과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인지세 등)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제안사(수행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지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결과 산출물의 소유권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있음

○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 참가 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을 조치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해 재입찰 또는 재공입찰을 진행할 수 있음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 관계법령 등의 숙지(근거 :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진흥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